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2019. 12. 3.(화)



목 차

◆ 자치법규

[입법예고]

제2019-3046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	2
---	---

자치법규

[입법예고]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-3046호

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인사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9년 12월 3일
서울특별시장

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

1. 제안이유

시설관리 직렬 내 기계·전기시설 직류의 채용 시 가산대상, 경력경쟁임용 등의 응시자격 및 인사가점 등에 반영되는 자격증의 종류를 추가로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신규임용시험 가점대상 자격증,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,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가점대상 자격증을 각각 다음과 같이 추가함(별표 6, 별표 9의2 및 별표 23)

가. 기계시설 직류

- (1) 기술사 자격증: 금형, 공장관리
- (2) 기능장 자격증: 금형제작, 판금제관
- (3) 기사 자격증: 건설기계설비, 프레스금형설계, 사출금형설계, 에너지관리, 메카트로닉스
- (4) 산업기사 자격증: 컴퓨터 응용가공, 생산자동화, 에너지관리, 건설기계정비, 프레스금형, 사출금형, 판금제관, 정밀측정
- ※ 기존의 기계가공조립 → 기계조립으로 변경
- (5) 기능사 자격증: 컴퓨터응용선반, 연삭, 컴퓨터응용밀링, 생산자동화, 전산응용기계제도, 공유압, 에너지관리, 판금제관, 정밀측정

나. 전기시설 직류: 발송배전 기술사 자격증 추가

다. 별표 6 및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전에 공고된 시험으로서 규칙 개정 이후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함(안 부칙 제2조)

3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·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(참조 : 인사과,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사과 (전화: 2133-5720, FAX: 2133-0773, E-mail: sk2253@seoul.go.kr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 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(<http://legal.seoul.go.kr>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- 안전한 서울 • 따뜻한 서울
- 꿈꾸는 서울 • 숨쉬는 서울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